

2023년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 신청 가이드라인

2022. 12.

재외동포재단

1. 사업내용

-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인회관 등의 건립, 매입, 개·보수, 증·개축 등의 사업
 - 신축 : 건물 매입, 신규 건립 등
 - 이전 증개축 : 구건물 매각 후 신규 건물 매입 및 건립 등
 - 개·보수 : 사용 중인 건물 시설 개선, 낙후·노후시설 정비 등

2. 지원대상

- 재외동포사회의 자조적 노력으로 사업 총 소요비용의 50% 이상 확보된 사업
 - 현재 확보된 사업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함(통장잔고 제출 필수)
- 지원 신청 연도 내 완료 가능한 사업(2023년 12월이내 완료가능 사업 지원)
- 이민사적 의미가 있거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,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- 재외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이 가능한 복지 및 차세대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된 다목적 회관 우선 검토

3. 지원 제외 대상

- 단체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거나 분규 중인 단체의 사업
- 개인명의(개인소유)로 진행되는 사업
- 채무상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
- 자체재원이 총사업비의 50% 이하인 사업
- 관할공관을 통하지 않고 재단으로 직접 제출한 단체의 사업

4. 지원규모 및 범위

- 소득상위국 : 총 소요예산의 30% 이내(최대 미화 50만 달러)
- 소득중상위국 : 총 소요예산의 40% 이내(최대 미화 40만 달러)
- 기타 개발원조대상국 : 총 소요예산의 50% 이내(최대 미화 30만 달러) *OECD 개발원조위원회 발표기준

※ 상기 지원규모를 준수하되 사업규모, 재외동포 수, 동포사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지원액 결정

5. 제출서류

- 지원 신청서(온라인 입력)
- 사업계획서(온라인 입력)
- 단체현황조사서(온라인 입력)
 - ※ 단체연혁, 임원현황,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서 별도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사업 수지계획서(온라인 입력)
- 각종 증빙 서류(파일 첨부 또는 별도 제출)
 - 현재 확보자금 증빙자료(은행 잔고 증명서, 거주국 정부보조금 교부확인서 등)
 - 부족액 조달 계획 관련 증빙서류(기부약정서 등 *사업비 부족액 전체에 대한 조달계획임)
 - ※ 재외동포재단 지원금(추가 신청계획 포함), 구두 기부약속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 - 인허가 및 계약관련 서류(계약서, 인·허가 증명서, 감정평가서 등)
 - ※ 단체명의로 등록된 서류에 한함, 개인명의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
 - 단체 정관
 - 사업추진 계획서(공정표 등 세부추진 일정 포함)
 - 건물 도면 및 사진(내외부, 주변), 대상 건물 시가지도(한인 밀집지역 등)
- 기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요청시 제출)

6. 지원절차



	↓ 의견 작성 및 제출 ('23.1.31까지)	관할지역의 수요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재단으로 결과 제출
재 단	↓ 심 의 ('23.2월)	'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' 심의위원회 개최 ■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
	↓ 심의결과통보 및 지원금송금 ('23.3~4월)	심의위원회 개최 후 관할공관에 심의결과 통보 ■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■ 심의위원회 개최 후 전문으로 심의결과 통보
재 외 공 관	↓ 지원금 교부 (사업)	지원금 수령 및 지원금의 교부 ■ 사업의 진척도를 평가하여, 지급절차에 따라 지원금 교부 ※ 지원금의 규모, 지급방법 및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
동 포 단 체	↓ 사업진행 ('23년 1월 ~'23년 12월)	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사업진행 ■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에 공관을 통해 재단의 승인 요청 ■ 사업취소시 지원금 전액을 공관을 거쳐 재단으로 반납
	↓ 결과보고서 제 출 (사업종료 후 60일 이내)	사업종료후 60일 이내 관할공관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※ 공관은 접수된 결과보고서와 평가서를 재단으로 제출

7. 유의사항

- 단체의 신청서제출 일정은 관할공관의 일정안내 참조
-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,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어야 함
※ 필수제출서류 누락시 온라인 지원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함.
- 단체명의로 진행되는 사업만 지원 신청 가능(개인명의 사업 지원 불가)
- 재외동포재단은 지원 심의 전·후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
- 2023년 12월 이전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, 지원(심의) 제외
-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으로 진행된 사업의 경우, 단체의 운영정관에 해당 건물에 대한 임의처분 방지조항 곧, '건물에 대한 재산권 처분 결정 시, 관할공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' 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, 개정된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바,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함

- 지원금은 사업 진척도를 평가, 완료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는 시점(사업 추진의 마지막 단계)에 단체에 전달되므로, 지원신청시 이 점에 유의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 확보계획의 수립을 요망함.

8.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(www.korean.net) 이용절차

- 시스템 이용 절차
 - ID/PW 로그인 ⇒ 재단사업 ⇒ 지원사업 ⇒ 사업 및 신청서 선택 ⇒ 신청서 작성 ⇒ 저장(제출기한 내 수정 가능) 또는 제출(제출 후 수정 불가능) ⇒ 신청서(붙임자료 포함) 공관제출(작성한 신청서를 인쇄, 서명하여 제출)
 - ※ 신규 ID/PW : www.korean.net ⇒개인회원 가입 ⇒ 단체회원 가입 ⇒ 재외동포재단 승인 (3일 이내 메일 통보)
 - 이미 가입한 단체는 사용 중인 ID/PW 사용
-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
 - 전화 : +82-64-786-0292 <한국시간 09:00~18:00>
 - 이메일 : pms01@okf.or.kr

// 끝 //